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65 발의연월일: 2023. 1. 13.

발 의 자: 송재호 · 위성곤 · 김정호

김성주 · 홍정민 · 최강욱

오기형 · 김주영 · 김한규

허 영 · 윤영덕 · 신정훈

김두관·정태호·김민석

양경숙 • 김병주 • 김용민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당선인의경우 교육연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근거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른 지역 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같은 법 제190조의2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는 소속 <u>의원</u> 들이	②의원[「공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른 지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같
	은 법 제190조의2에 따른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
	<u>다)을 포함한다]</u>
	,